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양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춘곤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034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8월 14일

발 의 자: 김춘곤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 석, 박영한,
박춘선, 박철성, 박환희,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봉준, 이종배,
이종태, 이효원, 이희원,
임춘대, 장태용,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한 신,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48명)

1. 제안이유

- 운영 실적이 저조한 물순환 시민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약어를 규정하는 등의 자구 수정을 통해 조례 운용 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1만㎡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사전협의 전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수정함. (안 제9조제2항)
- 나. ‘물순환 시민위원회’를 폐지함.(안 제21조~제32조 삭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정책기본법」, 「지하수법」
-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시의”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의”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장은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협의 전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제21조부터 제32조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순환 시민위원회 자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물순환 시민위원회에서 자문한 것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관리 주관부서의 전문가 자문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조 제목 중 “심의·자문”을 “자문”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시장은 물 재이용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본 책무) ①·② (생 략)</p> <p>③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u>시의</u> 관련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p> <p>④ (생 략)</p> <p>제9조(사전협의 대상과 시기) ① (생 략)</p> <p>② <u>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협의 전 제21조의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6장 물순환 시민위원회</u></p> <p>제21조(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u>시장은 빗물관리와 물의 재이용을 통한 물순환 회복정책의 자문을 위하여 시민·전문가·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물순환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u></p>	<p>제3조(기본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의</u>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사전협의 대상과 시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시장은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협의 전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한다.</u></p> <p><삭 제></p> <p><삭 제></p>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자문한다.

1. 물순환 도시 조성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영향개발에 관한 정책 및 제9조에 따른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저영향개발 사전협약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빗물분담량 산출
5.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
6.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기준
7. 빗물관리시설 운영 및 확대
8. 물 재이용시설 운영 및 확대
9. 지하수의 보전·관리·조사·개발·이용
10. 토양 오염방지와 토양환경보전
11. 빗물관리 등의 시민실천 모델 개발
1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외부위원 위촉시에는 「양성평등

<삭 제>

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리지질, 응용 지질, 수문, 토양보전관리, 환경, 빗물관리, 물의 재이용, 도시계획, 자연재해,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빗물관리, 물재이용, 지하수, 하천 등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③ 내부위원은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행정2부시장, 재난안전관리실장, 균형발전본부장, 물순환안전국장, 푸른도시여가국장을 포함한다.

④ 위촉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 1명 및 행정2부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위원의 임기) ①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처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처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처리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5조(결격사유) 시장은 다음 각

<삭 제>

<삭 제>

<삭 제>

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외 장기 체류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제2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분과위원의 과반수 참석으

<삭 제>

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자문 안건인 경우에는 개의 및 의결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소속, 성명
3. 회의 안건과 처리내용 등

⑥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집행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

제2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빗물관리 분과위원회
2. 물의 재이용 분과위원회
3. 지하수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분과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연구단을 둘 수 있으며,

<삭 제>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물순환 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연구 및 공청회, 토론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30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삭 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순환 시민위원회 자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물순환 시민위원회에서 자문한 것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관리 주관부서의 전문가 자문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조 제목 중 “심의·자문”을 “자문”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시장은 물 재이용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